

## 홍보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“안산대학교”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홍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“홍보위원회”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홍보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대학 UI(UNIVERSITY IDENTITY)에 관한 사항
3. 기타 대학 홍보와 관련한 주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

제7조(서기) 위원회에 위원 중 1인을 서기로 둔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(이하 “위원”)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0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①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로 폐지한다.

② (경과조치) 2020년 6월 1일부 대학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이 규정은 폐지하고 입학홍보전략위원회규정으로 제정한다.